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의 학교 배정 시 고려사항 신설〉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7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학생의 학교 배정 시 고려사항 신설	4
2. 개정안 부칙	16
※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수진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8. 3.

3. 회 부 일 : 2026.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학교·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천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 형태의 다변화와 학부모의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과 교육 수요의 충족이 학교 배정 제도의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배정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적 권익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학생의 주거지와 통학거리 간의 합리적 연계나 실제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 사례가 상존하고 있으며, 개별 수요와 선호가 차단된 배정 처리는 단순 교육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어 학부

모의 선택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신학기마다 반복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기계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통학구역 자동 지정으로 인해 집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행정 경계선 설정의 경직성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넓은 대로를 무리하게 건너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기회는 차단되어 있음.

중학교 배정 역시 실제 학생의 생활권이나 통학 노선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유기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광역 학교군 내 임의의 추첨 방식으로 일관하여 학생들은 원거리 등교·하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고교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도 실제 학생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학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인해 편도 1시간이 초과하는 원거리 고등학교로 무조건적 강제 배정을 당하는 낙첨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과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권한을 지닌 교육장으로 하여금 통학구역 지정 시 학생의 도보 통학 한계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최소한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배정 시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 배정 시에는 교육감이 각각

학생의 개별 수요,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및 지망 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초·중·고 전반에 걸쳐 단순 행정 편의주의적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밀착형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생의 학교 배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방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하는

	<u>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 학교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 배정 기준 및 방법¹⁾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초등학교의 경우 취학의무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²⁾),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43조제2항³⁾ 및 제47조제2항⁴⁾).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이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면서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고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초·중등교육법 시

1) [참고1] 학교급별 배정 방법

2)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생략)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생략)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5).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은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영 제68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6).

평준화지역의 후기고등학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은 학교 간 거리·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영 제77조제2항7)). 이와 함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계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영 제81조제5항8), 교육감은 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되 학교군을 정할 때에는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84조제2항·제5항·제6항9)).

-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 가. 학교군 설정
 - 나. 학생배정방법
 -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3호·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한편, 현행 학교배정 방식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경우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통학구역 경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먼 학교에 통학하거나 간선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실제 생활권이나 교통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원거리 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¹⁰⁾.
- 이에 개정안은 학교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에는 학생의 도보 통학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2제1항),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수요, 통학거리, 교통여건 및 지망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 개정안은 학생의 통학안전과 통학편의를 학교배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학교배정 고려사항의 법률 명시 필요성

- 학교배정이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배정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 중심의 배정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상당수 고려요소가 현행 하위법령이나 행정운영

10) 제안이유

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통학편의’를, 중학교의 경우 거리·교통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교통 및 학교분포·지역적 여건 등을 학교배정 관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전혀 새로운 배정기준을 신설한다기보다는 현행 하위법령 등에 산재하여 있는 고려요소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면서 일부 요소를 추가하였음.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¹¹⁾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기준에서는 학교 위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도보 약 30분,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이용 약 30분 내외의 통학 거리 및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¹²⁾.

□ 한편,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11) [참고자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생략)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12) 다만, 이러한 교육환경평가 기준은 주로 학교 설립·개발 단계에서 학교의 위치 및 교육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개별 학생의 실제 학교배정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아님.

한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¹³⁾에 대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¹⁴⁾. 헌법재판소는 교육수요, 지역주민의 의사, 지역별 여건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현행 위임체계가 교육제도 법정주의¹⁵⁾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 배정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2) “보호자의 선택권”의 의미 및 반영방식

□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시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현행 통학구역 제도의 구조와의 관계에서 선택권의 구체적인 의미와 반영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장이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면, 읍·면·동의 장이 그에 따라 입학

13)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헌재 2012. 11. 29. 2011헌마827

15) 「대한민국헌법」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할 학교를 지정하여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¹⁶⁾.

다만,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가 보호자의 선택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¹⁷⁾.

문제는 통학구역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반적으로 설정되는 반면, “보호자의 선택권”은 개별 보호자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통학구역 설정의 고려요소로 규정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현행 시행령은 통학구역 결정 시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고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통학구역 결정 시 보호자의 선택권을 반영할 경우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 및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의 통학 거리나 통학로 안전성 등 다른 핵심 고려 요소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1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가 제기됨.

- 따라서 개정안이 개별 보호자에게 특정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통학구역의 설정·조정 과정에서 학생·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라면, “보호자의 선택권”을 직접적인 고려요소로 규정하기보다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할 수 있음¹⁸⁾.

3) 규정의 명확성 및 적용대상의 적정성

-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그 의미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26조의2제1항의 “유연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교육장이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통학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개정안이 이미 도보 통학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항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8) 참고로, 평준화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도 현행 시행령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평준화지역 지정 및 학생배정제도 결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4항). 특히 여론조사 내용에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2항의 “학생의 수요”는 지역별 학생 수 등 객관적인 교육수요를 의미하는지, 개별 학생의 학교 선호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고, 후자의 경우 같은 항의 “지망 순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일반적인 학교유형의 구분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적용제외가 필요한 학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출]

<교육부>: 신중 검토

- 초등학교는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정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평준화)는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군 등을 정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지역·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음
- 현행 제도에서도 **통학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 * 교육환경평가 시 통학범위, 통학안전 등을 평가하며,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 안전성 및 근거리 통학(1.5km 이내) 명시
- 통학로의 안전성, 보호자의 선택권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배정 예측의 정확도**를 저해하며,
- 특히, 보호자의 선택권, 지망 순위 등을 명시할 경우 **특정 학교로의 쏠림·기피**로 인한 **학교 서열화**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시·도교육청>

○(대구·서울·충남교육청: 신중검토)

- 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특정 학교 쏠림, 행정 신뢰도 저하 및 학생 배치계획의 정밀도 저하 우려
- 또한, 현행 제도에서도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 신설 필요성은 낮음

○(경기교육청: 일부수정)

- 통학 '거리'가 명시될 경우 법적분쟁 및 집단행동으로 비화되어 평준화 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우려

< 수정안 >

②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여건, 교통 여건 및 지망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일부수정)

- 보호자의 초등학교 선택권 인정 시 특정학교 쏠림·기피로 인한 학교간 규모와 교육여건 불균형, 학교 간 서열화 심화 등 우려

〈 수정안: 울산교육청 〉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 수정안: 군산교육지원청 〉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일부수정)

〈 수정안 〉

① 교육장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정하는 경우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산남부·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 일부수정)

〈 수정안 〉

② 교육장이 중학교를, 교육감이 고등학교를 배정(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거나 학생의 부담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학생의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및 지망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교육청별 배정계획 등의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입학·배정 절차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관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다음 연도 입학 아동의 통학구역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 시행 전에 이미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이나 학교배정계획이 확정·공고되었으나 실제 신입생 배정은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안 부칙 제2조의 문언상 배정단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학생·보호자는 종전의 배정기준을 전제로 학교에 지원하였음에도 실제 배정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입학전형 및 배정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따라서 시행일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간 이상 연장하기보다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학년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¹⁹⁾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제3조(학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 학교군 또는 해당 학년도의 입학·배정계획이 이미 결정되거나 공고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학생의 학교 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1

학교급별 배정 방법

학교급	취학 및 배정 방식
초	▶ 교육장이 관할 초등학교별 통학구역* 등을 정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예시) 서울개일초 : 강남구 개포1동 21~28통, 개포2동 1~5통, 도곡2동 17~28통, 30~35통 서울개포초 : 강남구 개포2동 13~29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등에 따름
중	▶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배정을 위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천 방법을 정하여 고시 - 입학지원자는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 ※ 교통 불편 지역은 '중학구'에 따라 추천 없이 학교 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천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천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입학·배정업무 계획 등에 따름
고	▶ 교육감이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군을 정하여 고시 - 입학지원자는 2이상을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천에 의하여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천·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세부기준은 교육청별 고입전형 기본계획 등에 따름

자료: 교육부

참고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조망 및 일조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 환경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 해 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등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6)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 시설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비고

1. 교육부장관은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한 측정·조사 방법 등 평가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교지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제1호라목2)가) 및 나)에 따른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3), 제2호나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